

복 명 서 (재난위험시설 지정)

문서번호 주거정비과-4232

보고일 2015.04.10.

보고자 지방시설주사보
이정우

주무관	재개발2담당	주거정비과장	도한영부장		결
이정우	정병익	정택근	04/10 김장수		재
주무관		권익생			
뉴타운사업1담당		강우균			

우리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내 장위2구역 재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난위험시설로 지정·관리하고자 합니다.

I 관련 규정

■ 추진근거

-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(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 안전조치)
-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2조(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·관리 지침)

■ 시설현황

- 공 사 명 : 장위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아파트 신축공사
- 위 치 : 성북구 장위동290-9 일대
- 건축규모 : 지하3층, 지상30층 철근콘크리트조,
연면적 : 25,194㎡, 5개동 513세대

- 현 공 정 : 2015.04.01. 착공신고처리
 - 기존건물 철거율 : 98%, 2개동 미철거
- 관리주체 : 장위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
- 시 공 사 : 코오롱글로벌주식회사
- 위치도 및 현장사진(2015. 4. 현재)



■ 향후조치계획

- 상기 대형건축공사장에 대하여 재난위험시설(D)로 지정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.
 - 관리책임자 지정
 - 정 : 도시환경국장
 - 부 : 주거정비과장, 담당자 권익생
 - 재난위험시설 지정 및 소유자 서면통보
 - 재난관리부서 지정사실 통보. 끝.